

의안번호	2205591
의 퇴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4.11.22.
추계번호	24C511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600만원(연평균 4,102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	100	-	-	106	-	206	41.2

주: 1.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2025년과 2028년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
2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3(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, 장애, 질병,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(이하 “가족돌봄아동”이라 한다)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·상담·교육·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	의무규정
2	안 제44조의4(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	의무규정
3	안 제44조의5(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4조의3(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4조의4(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)	○	○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안 제44조의5(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주: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, 가족돌봄아동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, 청년
미래센터와 유사

-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에게 필요한 상담·교육·의료 등을 지원
(안 제44조의3)하고, 해당 아동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아동지원센터를
설치·운영(안 제44조의5)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이
추진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“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”을 통하여 지원전담기관의 인건비
와 사업비,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전담인력을 가족돌봄청(소)년에 배정하여
상담·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(2024년 예산 20억 9,400만원)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수, 세부
지원내용, 사업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
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가족돌봄아동의 정의가 세부적으로 측정이 가능
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
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을 대상으로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비용은 “2024년 가족돌봄청년·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”(1억원), “2023년 고립·은둔청년 실태조사”(9,900만원), “2023년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²⁾”(9,000만원) 비용을 준용하여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비용은 2025년 1억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600만원(연평균 4,102만원)으로 추계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~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기준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	2.1	2.0	2.0	2.0	2.0

2) 한편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“2022년 가족돌봄청(소)년 실태조사”의 경우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(소)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만 18세 미만 아동도 일부 포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	100	-	-	106	-	206	41.2

주: 1.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2025년과 2028년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
2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